

# 건축법 시행령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9, 668호

건설부장관  
고 재 일

1979년 11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3 제 5호 중 “건설부장관이 문화공보부장관과”를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로 한다.

제104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층에 있어서 피난층 또는 지상에 통하는 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그 계단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를 30미터 이상 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11조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2항 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를 “제 1항의 규정에”로 한다.

① 건축물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 및 옥외 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통하는 폭 2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2조의 제목“(대규모의 목조등의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를 “(대규모 건축물등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로 하고, 동조 제 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그 위(도로 또는 공지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주위(도로·공지 또는 인접매지 경계선에 면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폭 3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0조제 1항 중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자연녹지지역 : 60퍼센트

제168조의 제 1항 중 “시장·군수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는”을 “건축물의 출입을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 2호 중 “판매시설·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의료시설인 경우”를 “판

매시설(판매장의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숙박시설(여관·여인숙 및 하숙을 제외한다)·의료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인 경우”로 한다.

제168조의 3 제 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8조의 3 제 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대지면적의 40퍼센트. 다만, 학교·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10퍼센트로 한다. 퍼센트로 한다.
2. 기타지역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다만, 3,000평방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한다.

[별표 4] 상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 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장(자동차수리공장을 제외한다)

[별표 5] 전용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공장에 부설되는 교육 및 연구시설

[별표 6] 공업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교육 및 연구시설(공장에 부설되는 교육 및 연구시설을 제외한다.)

[부 표]의 제24항 본문 중 “주유소 기타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를 “주유소 기타 소방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 가스저장 시설등의”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부
-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

## 경력의 인정기준

경력산정등급	경력구분	환산율
1 등급	1.건축사 사무소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 건축사로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경력을 포함한다) 2.건설업법이나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건설업체·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회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체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3.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 기관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4.대학원에서의 건축분야에 관한 학위과정 5.건축분야에 관한 교직경력 6.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로서의 군복무 경력 1.1등급 제1호내지 제3호 이외의 업체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
2 등급		80%

2.대학원에서의 건축관련분야(도시계획·조경 및 토목분야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관한 학위과정

3.건축관련분야에 관한 교직경력  
4.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사병으로서의 군복무 경력

3 등급	2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력으로서 건축관련분야업무에 종사한 경력	전 60%
------	--	-------

별표 3 건축사사무소의 건축보조사 및 시설기준

구분	항목	단독사무소	합동사무소
1.인구 100만이상의 도시	<input type="radio"/> 건축보조사 <input type="radio"/> 사무실(전용면적) <input type="radio"/> 제도판 <input type="radio"/> 전화	2인이상 40평방미터 이상 3대이상 1대이상	3인이상 60평방미터 이상 5대이상 1대이상
2.기타지역	<input type="radio"/> 건축보조사 <input type="radio"/> 사무실(전용면적) <input type="radio"/> 제도판 <input type="radio"/> 전화	1인이상 30평방미터 이상 2대이상 1대이상	2인이상 50평방미터 이상 4대이상 1대이상

검소한 생활로 물가고를 이기자  
 하루위해 낭비말고 백년위해 저축하자